



농·어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·규칙 개정

조합 기획조정팀 제공

조세특례제한법(2001. 12. 29, 법률 제6538호) 및 농·축산·임·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(2001. 12. 31, 대통령령 제17465호)이 개정되어 농·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 시설을 정하고, 농산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·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, 농·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·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 주요골자 >

- 가. 농·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농·어민의 범위를 개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, 축산업 주업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등으로 함(안 제6조)
- 나. 농·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는 환급대행자가 업무수행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를 1회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, 1회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3조)
- 다. 면세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기계 등의 범위를 농업용 트랙터 및 콤팩트, 10톤 이상의 선박 및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으로 함(안 제17조)
- 라. 농업기계에 대한 연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기종별·규격별 연료소모량과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선박·수산물 양식시설 및 수산물생산기초시설등에 대한 연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(안 제19조)



농·어업용기자재 및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

1. 농·어업용기자재에 대한 VAT 사후환급제도 신설

〈법 개정내용〉

- ◆ 기존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·어업용기자재 이외에 농업용과 산업용으로 범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
 - 환급대상 기자재, 환급대상 농·어민의 범위, 사후환급절차, 부정환급시 제재, 환급대행 수수료 등 시행령에 위임

(1) 부가세 환급대상 농·어업용 기자재(13개 품목)

■ 농업용 기자재 : 5개 품목

-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: 비닐하우스용, 보온못자리용, 농작물 멀칭 및 피복용에 한함
- 농업용 파이프 : 비닐하우스용에 한함
- 농업용 포장상자 : 종이재질의 농·축산물 포장용에 한함
-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: 곡물 포장용에 한함
- 과일봉지 : 과일병충해 방지를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함

■ 어업용 기자재 : 8개 품목

- 양어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: 비닐하우스용에 한함
- 양어장용 파이프 : 비닐하우스용에 한함
- 어상자 : 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함
- 와이어로프 : 어선에 한함
- 어업용발전기 : 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함
- 양어장용 초파기 : 혼합사료제조용에 한함
- 활어냉각기 : 어선에 한함



- 양어장용 취·배수관(PE, PM, PVC파이프)

※ 세금지원효과 : 약 900억원

(2) 환급대상 「농·어민」의 범위

- 농·어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
-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
- 축산주업법인 및 어업주업법인

※ 주업법인 :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/3이상을 농·어민 및 임직원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

(3)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

■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자

- 농·어민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농업법인 등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·수협 및 업연초생산조합이 농·어민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대행

■ 환급신청 기한

- 농·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한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농·수협 등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, 농·수협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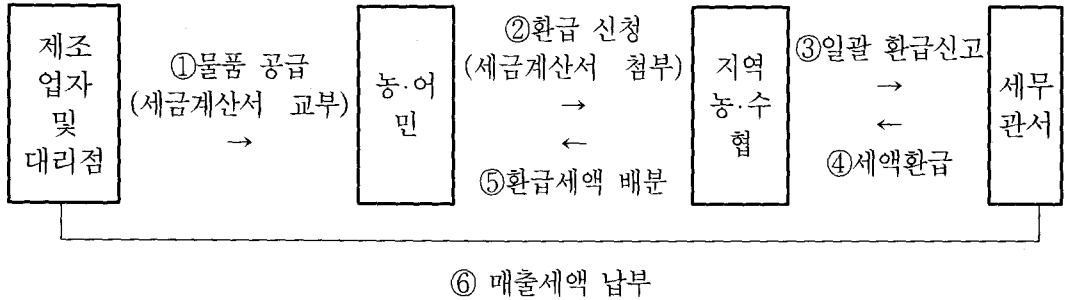
■ 세무서의 환급기일 : 환급신청 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

■ 농·수협 및 업연초조합의 환급액 배분기한

- 농·수협 등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농·어민에게 지급



※ 사후환급 절차도



2. 농·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

〈법 개정내용〉

◆ 면세유공급대상 농·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실제유류사용량에 비례하여 면세유류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자동계측기 부착·생산실적제출 의무화

○ 면세유 한도량 결정·면세유 배분 및 면세유류공급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

※ 농·어업용 면세유 감면 규모 : 약 1조원

(1)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의 범위

- 농민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등
- 어민,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,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

(2) 「면세유 실사용량」 확인절차 규정

■ 운영시간을 측정하는 「자동계측기」 부착대상 농·어업용 기계

- 대상기종
 - 신규로 구입하는 트랙터, 콤바인, 10톤 이상 농선
 - 10톤이상 어선(6,200척), 선외기어선(25,000척)



○ 자동계측기 요건

- 운행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
- 어선의 경우 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

■ 생산 실적 등 제출대상 농·어업용 기계

- 「농업용난방기, 내수면양식어업시설」 등을 운영하는 농·어민으로 직전년 면세유 공급량이 8만 ℓ(경유기준 약 3천만원)이상인 경우 면세유 사용과 관련된 생산실적등 자료제출
 - 농·수협은 다음연도 면세유 구입권 발급시 전년도 이용실적을 감안하여 교부량 가감

(3) 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강화

- 최초 면세유 구입권 신청시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·영어사실 신고서 제출
 - 신규 또는 중고구입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신고
-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종별,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종별 면세유 한도량(공급 기준량)을 산정
 - 농·어민에 대한 배정은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결정하되, 영농·영어규모 등에 따라 실제소요량을 파악하여 배정

3. 기타 사항

- (1) 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「새우·패류 건조시설」 등에도 면세유 공급
 - 어업에 필수적인 「새우 건조·자숙시설, 패류 자숙시설,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」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
- (2) 콩나물재배업자를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
 - 노지가 아닌 특정고정시설 내에서만 생산되는 「콩나물 재배업자」는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

< 이 상 >